



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,
특허로 더하는 행복



보도자료

www.kipo.go.kr
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

문 의	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	과 장 박호형 사무관 백인현	042-481-5274
	2016년 7월 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7월 3일(일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지리적 표시 단체 · 증명표장등록출원 예비심사면담제도 실시

- 출원인과 심사관의 면담 강화를 통한 지리적 표시 관련
출원의 신속한 권리화 지원 -

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지리적 표시 단체 · 증명표장등록출원(이하 '지리적 표시 출원'이라 함)에 대해 거절이유통지 전에 심사관이 출원인과 면담을 통해 거절이유와 보정방향을 안내하고, 출원인이 자진보정을 통해 미리 거절이유를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관련 출원을 신속히 등록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예비심사면담제도를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예비심사면담 신청은 지리적 표시 출원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, 지리적 표시 출원 중 우선심사결정을 받은 출원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'심사관/심판관 면담 코너'를 통하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코너에 3개의 면담 희망일시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.

예비심사면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은 정확한 심사와 조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될 수 있으며,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심사의견 및 거절사유를 설명하고, 출원인은 상표 및 제출 서류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할 수 있다.

예비심사면담 이후 출원인은 예비심사면담 내용을 참고하여 보정서를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3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, 심사관은 출원인의 보정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.

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“예비심사면담을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 및 보정방향에 대해 심사관과 미리 협의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등록결정 가능성을 높이고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,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내용에 대해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